

서면질문 답변자료

성명	김 정 도	소속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제 목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정책에 관하여		

< 질 문 내 용 >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정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질문 하오니
담당부서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여부 및 반영이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사유 명시)

□ 현황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단서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해 시장은 주정차금지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지난 8월 시장의 권한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저녁시간대 이후(18시 ~ 08시) 주정차 단속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평일의 경우 ‘일반도로’는 11:00 ~ 15:00, ‘어린이 보호구역’은 11:30 ~ 13:30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평일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대가 상이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대를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일부 시군(영천, 경산, 칠곡 등)의 경우 어린이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주차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행복주차장 증설, 주차구역 확충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한 후에 다시 단속유예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유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평일 단속유예 시간대를 ‘일반도로’와 동일한 11:00 ~ 15:00로 통일 할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왜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출퇴근 차량 감소 및 등·하교하는 인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말 및 공휴일 전일 단속유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답 변 자 료 >

질문

1.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단속유예 시간(11시30분~13시30분)을 일반도로(11시~15시)와 동일하게 변경 가능한지 여부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단속 유예시간 11시~15시 변경에 대하여

-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1. 10. 21.일자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이후 우리시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구간과는 다른 주정차 단속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또한, 지역 상권의 어려움과 지역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말·공휴일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저녁단속 유예 확대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성상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요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예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해당 의견을 수합하는 중이며 13시를 전후해 대부분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하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평일 단속 유예시간 확대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다수의 학교에서 제출하였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예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백번 공감하는 부분이며 단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요청하신 단속유예 시간을 추가 확대하지 못하고 현행시간을 유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구간별 단속 시간 차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시민 교통 의식 제고 노력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평일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관련 의견 및 타지자체 현황

<해마루초등학교-12641(2022.10.17.)>

1. 구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주정차유예의 범위가 상당히 큼니다. 단속유예의 허용치가 크고 시민의식도 부재하여 불법주정차가 습관화되어 있어 보입니다.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나들어야하는 차량의 안전 및 차량들 사이사이로 통행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어야지 유예확대를 고려한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아이들 하교 시간에 주정차가 가능한게 이상하네요.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은 시간대에 유예시간을 준다니요. 차라리 10시~12시가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강화 시행 지자체>

지자체	시행시기	단속내용		비고
		기존	변경	
경기도 포천시	6월	08:00~18:30(15분)	08:00~20:00(1분) 점심유예 해제	
충청남도 홍성군	8월	08:00~09:00(5분) 12:00~20:00(20분)	단속시간 24시간(5분) 주말유예 해제	
충청남도 아산시	10월	08:00~18:00(15분)	08:00~18:00(5분) 점심유예 해제	

질문 2. 주말 및 공휴일 구미시 전일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 가능 여부

□ 주말 및 공휴일 전일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에 대하여

- 주말 및 공휴일 전일 주정차 단속유예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말 전일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 시 금요일 저녁 18시부터 월요일 아침 08시까지 약 60시간 동안의 주정차가 허용되며 해당 시간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추가 불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시는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말 단속 요청이 평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유예 확대 시 구미시 전 지역으로 동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추가 민원 발생들로 인해 이동형 차량으로 단속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속유예를 원하는 주변 차량들을 포함한 구분 없는 단속 조치로 주말 및 공휴일 전일 단속유예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우리시는 주말 및 공휴일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원활한 차량흐름 및 보행자의 안전 통행로를 확보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주차편의를 위해 평일보다 완화된 단속시간을 적용하는 현행 주말 단속정책(단속시간 09:00~11:00, 15:00~18:00, 20분 정차가능)을 유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물론 주말 단속 완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주말 전일 단속유예 시행시 발생 예상 민원

1. 단속유예를 요청했던 지역상가 앞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영업방해 주장 및 추가 단속요청 민원
2. 주거지 주변 진출입로 주정차로 인한 교행 불편 단속조치 요청 민원
3. 도로폭이 좁은 생활도로 등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행공간 잠식 및 안전 위협 불편 민원
4.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용량의 감소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민원
5. 응급차량의 진입 및 통행 방해, 신속 대응 불가 상황 발생

<주말 및 공휴일 전일 단속유예 시행 중인 일부 지자체 현황비교>

구분(지역)	인구수	등록차량수	면적	비고
구미시	40만	22만3천	615.3km ²	휴일 주정차 단속유예
경산시	26만	14만5천	411.8km ²	
영천시	10만	6만4천	919.2km ²	
칠곡군	10만	7만2천	451km ²	